

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6년 1월 16일(금) 11:00 이후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6. 1. 16.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1
- (2)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2
- (3)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3
- (4)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4
-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5
- (6)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6
- (7)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7
 -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7
 - ②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8
-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9
- (9)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 10
- (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11
-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12

< 금융세제 >

- (1)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 13
- (2)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14
- (3)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수집 세부규정 마련 15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

- (1)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 16
- (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17
- (3)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 18
-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 19
- (5)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 20
- (6)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 21

< 국제조세 >

-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구체화 22
 - ①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22
 -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23
- (2)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 방식 구체화 24
 - ①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 24
 - ②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 25
- (3)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 26
-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27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	28
(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29
(3) 광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30
(4)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	31
(5)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32
(6)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33
(7)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34
(8)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	35
(9)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36
(10)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 명확화	37
(11)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38
(12)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	39
(13)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40
(14)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41
(15)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42
(1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43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시 고유번호증 제출근거 명확화	44
(1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구체화	4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46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	47
(3)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8
(4)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	49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합리화	50
①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추가	50
②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추가	51
(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	52
(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53
(8)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54
(9)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	55
(10)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 현실화	56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보완	57
(12)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	58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	59
(2)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60
(3)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61
(4)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	62
(5)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63
(6)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	64
(7)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65
(8)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66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67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67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	68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69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70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	71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	72
(6)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구체화	73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	74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	75

7. 주세법 시행령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76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	77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소득세 분야 >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78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78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79
(2) 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	80
①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	80
②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81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	82
(4)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	83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	84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85

< 금융세제 분야 >

(1)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86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87
(3)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사유 확대	88
(4)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89
(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90
①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90
②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91
③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	92
④ 고배당기업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절차	93
(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	94
(7)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	95

< 법인세 분야 >

(1) 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96
(2)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97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98
(4)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99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범위 구체화	99
②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가	100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101
(6)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	102
(7)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103
(8)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	104
(9)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	105
(10)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106
(11) 국제금융기구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세부사항 규정	107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108
①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	108
②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합리화	109
(13)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확대 및 정비	110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10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111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12
(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및 가속상각 범위 구체화	113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114
①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구체화	114
② 상시근로자 계산 간소화	115
③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116
(17)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구체화 ·	117
(18) 지방이전 감면한도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18
(19)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	119
(2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요건 규정	120
(21)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산세조문 정비	121
(2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122
① 환류대상인 배당액 범위 구체화	122
②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123
③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 ·	124
④ 환류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125
(2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126
(24)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127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128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128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129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정세액 계산방법 신설	130
(2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131
(27)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명확화	132
(28)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범위 확대	133
(29)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134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135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분야 〉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136
(2)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137
(3)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취득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 마련 ····	138
(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139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	140
(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 ···	141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142
(8)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	143
(9)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정 예외 사유 신설	144

〈 부가가치세·주세 분야 〉

(1)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의무 강화	145
(2)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146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 147
(2)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사항 규정 148
(3)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등 149
(4)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구체화 150

9.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151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152
(3)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 153
(4)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 154
(5)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155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 156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157
 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 157
 ②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158
(8)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 159
(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160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161

10. 세무사법 시행령

(1)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 개선 162
(2)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규정 마련 163
(3) 세무사·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보완 164
 ① 결격사유 조회를 국세청·세무사회에 위임·위탁 164
 ②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결격사유 확인 사무 추가 165
(4)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기준 마련 166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67
 ①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 167
 ② 대상조세의 배분범위 확대 168
 ③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 170
 ④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 171
 ⑤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 172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 173
 ⑦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 174
 ⑧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175
 ⑨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 176

(2)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178
①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178
②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179
③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	180
④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181
⑤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	182
⑥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	183
⑦ 수시부과의 사유 등	184

12.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 시행령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	185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	186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187
(4)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188
(5) 면세품 외국 미반출 시 회수 절차 합리화	189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 정비	190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191
(8) 관세청장의 마약류등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	192
(9)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	193
(10)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 도입	194
(1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195
(12)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	196
(13)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97

13. 기타 개정사항

* 교육세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조세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	198
(2)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	199
(3)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범위 확대	200
(4)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명칭 정비	201
(5)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201
(6) 무면허 주류 증개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	202
(7) 과세자료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203
(8)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제정	204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205
--------------------------	-----

1.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②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③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input type="checkbox"/> 한도 확대 ○ (좌 동) ○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동일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u>210만원 이하</u> * 봉급·급여·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야간근로 등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u>3,000만원 이하</u>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u>260만원 이하</u> ○ (좌 동) - <u>3,700만원 이하</u>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소득령 §51)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 과세</p> <p>○ (어업·양식업)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p> <p>○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수입 금액으로서 사업소득</p>	<p><input type="checkbox"/>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p> <p>○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보상금은 사업소득</p> <p>○ (좌 동)</p>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소득령 §78의3)

현 행	개 정 안
<p>□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p> <p>○ (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p> <p>○ (미가입시)</p> <p>-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p> <p>- (1대 초과분) 미인정</p> <p>▪ ('24~'25년) 업무사용비율 금액의 50% 인정(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p> <p>○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업무사용 비율금액 × $\frac{\text{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일수}}{\text{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 필요일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 합리화</p> <p>○ (좌 동)</p> <p>○ 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단, '24~'25년의 경우 (50% + 가입기간비율 × 50%)*로 인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 업무 사용 비율 금액 × {50% + $\frac{\text{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일수}}{\text{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 필요일수}} \times 50\%$}</p>

<개정이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관련 필요경비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소득령 §118의6)

< 법 개정내용(소득법 §59③(1))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예능학원의 범위</p> <p>○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음악, 미술, 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p> <p><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의 범위</p> <p>○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p> <p style="margin-left: 20px;">*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 포함</p> <p>○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p> <p style="margin-left: 20px;">※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동일</p> <p><input type="checkbox"/> 교육비의 범위</p> <p>○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p> <p style="margin-left: 20px;">※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와 동일</p>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출서류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인정범위 완화 ○ (좌 동) - 국외 원천 퇴직소득 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대체 가능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소득령 §210의2·§210의3)**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2의2·§162의3) >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의 합산발급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발급방법)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합산발급 가능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p><input type="checkbox"/> 합산발급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설치·운영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소득령 §210의3)

현행	개정안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p> <p>○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보완</p> <p>○ (좌 동)</p> <p>- 단, 여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p>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소득령 §211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급대상)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발급의무 개시)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준용 범위)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시스템 사업자의 등록 <p>*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규정 준용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p> <p>*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의무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의무(미수령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의무 발생)</p>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통지의무 명확화

(9)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가축별 규모 - 젓소·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산양·면양 300마리 - 토끼 5,000마리 - 닭·오리 15,000마리 - 양봉 100군 <추 가>	<input type="checkbox"/>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확대 ○ (좌 동) -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개정이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소득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시 자녀수별 공제금액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input type="checkbox"/> 자녀수별 공제금액 조정 ○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개정이유〉 원천징수세액 합리화

〈적용시기〉 '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등)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❶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병·의원, 약사업 등 ❷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❸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❹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❺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❻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❶~❺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대상 확대 (2개 업종 추가) ○ 보육시설 운영업* 추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 (좌 동) ○ 그 외 기타 숙박업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소득 파악 제고 및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1)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소득령 §26의3¹²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 ○ 의제배당 ○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범위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A* 운용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된 이익 <p style="font-size: small;">*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만기시 원금 보장)</p>

<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p> <p>○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p> <p>* 「법인세법 시행령」 §72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3)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수집 세부규정 마련(소득령 §225의2③)

< 법 개정내용(소득법 §174의2) >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자료 수집 근거 추가

○ 거래내역 제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 주기</p> <p>○ (분기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p> <p>① 파생상품등 거래내역</p> <p>②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p> <p>○ (요청시) 국세청장이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p> <p>①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 요청시 제출내역 추가</p> <p>○ (좌 동)</p> <p>② 국외주식등 거래내역</p>

<개정이유> 국외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1)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소득령 §155⑩)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p> <p>*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p> <p>○ (귀농주택 범위)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다음 요건 충족하는 주택</p> <p>① 취득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 아닐 것</p> <p>② 대지면적 660㎡ 이내</p> <p>③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p> <p>④ 농지소유자(1,000㎡ 이상)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 또는 <u>어업인</u>*이 취득한 주택</p> <p>* 「수산업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면허 어업·양식업자 또는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p>	<p><input type="checkbox"/> 범위 합리화</p> <p>○ 어촌 귀농주택 취득자 추가</p> <p>- (좌 동)</p> <p>- <u>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u></p>

〈개정이유〉 농-어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61의3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96) >

-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
- 소득처분된 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도자가 주주등인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② 양도자가 주주등,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양도·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양도·취득시기</p> <p>○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p> <p>○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신설</p> <p>○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기존 토지 취득시기와 동일</p>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경정·결정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63의2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업상속공제적용률* 산정방법</p> <p>* 자산가액 중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서, 기업상속공제 재산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활용</p> <p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공제금액}}{\text{기업상속 재산가액}}$</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기업상속공제 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방법</p> <p>취득가액 = ① + ②</p> <p>① : 피상속인 취득가액 × 기업상속공제적용률</p> <p>② : 상속인 상속재산 취득가액 × (1 - 기업상속공제적용률)</p> </div>	<p><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보완</p> <p>① 개인기업의 경우: (현행과 같음)</p> <p>② 법인가업의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frac{\text{기업용 자산}}{\text{총 자산}}$</p>

<개정이유> 기업상속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소득령 §167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상증법 준용)</p> <p>*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 후 과세</p> <p>○ (평가방법) 평가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p> <p>-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 가액 포함</p> <p>○ (평가기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매매·공매등 가액 및 매매사례 가액 평가시 모두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참고)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 속</th> <th style="text-align: center;">증 여</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내 신고일까지</p>	상 속	증 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p><input type="checkbox"/>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명확화</p> <p>○ (좌 동)</p> <p>○ 매매·공매 등 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현행 동일)</p> <p>-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예정신고일까지*</p> <p>*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p>
상 속	증 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6)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소득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p>□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저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에서도 제외 ○ 동거봉양, 혼인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p>- (취득가액) <u>6억원 이하</u></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준공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u>7억원 이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수에서도 제외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제외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9억원)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준공후 미분양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구체화

**①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소득령 §117의2③·④)**

< 법 개정내용(소득법 §57의2)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및 공제한도 삭제

○ 구체적인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p> <p style="margin-left: 20px;">*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p> <p>○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p> <p style="margin-left: 20px;">- ①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한계세율}$</p> <p style="margin-left: 20px;">- ②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1 - 한계세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추 가 ></p>	<p><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및 퇴직소득 공제금액 추가</p> <p style="margin-left: 20px;">※ 개정 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단순한 방식</p> <p>○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A × B) + (C × D)</p> <p style="margin-left: 20px;">* A: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B: 배당소득 조정계수 C: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D: 연금소득 조정계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order: none;">기준소득*</th> <th style="border: none;">B</th> <th style="border: none;">D</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order: none;">1천 4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 none;">1</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5천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 none;">0.99</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8천 800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 none;">0.88</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1억 5천만원 이하</td> <td style="border: none;">0.76</td> <td style="border: none;">0.89</td> </tr> <tr> <td style="border: none;">3억원 이하</td> <td style="border: none;">0.72</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5억원 이하</td> <td style="border: none;">0.70</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10억원 이하</td> <td style="border: none;">0.67</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10억원 초과</td> <td style="border: none;">0.64</td> <td style="border: none;"></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margin-top: 5px;">* 종합소득과세표준, 연금소득 등 고려한 소득</p> <p>○ 퇴직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p>	기준소득*	B	D	1천 400만원 이하	1		5천만원 이하	0.99		8천 800만원 이하	0.88		1억 5천만원 이하	0.76	0.89	3억원 이하	0.72		5억원 이하	0.70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기준소득*	B	D																										
1천 400만원 이하	1																											
5천만원 이하	0.99																											
8천 800만원 이하	0.88																											
1억 5천만원 이하	0.76	0.89																										
3억원 이하	0.72																											
5억원 이하	0.70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89의2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적립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0.55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 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해당 소득 × 세율'의 금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 방식 구체화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8의9 등) >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 국외주식에 대한 구체적 과세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①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소득령 §178의8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국외전출세 적용 제외 국외주식등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제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국외전출세 과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③의 요건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제공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 한정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② 외국인근로자*가 소유한 국외주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 ③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시작일 이전에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국외주식등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소득령 §178의9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등의 양도가액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상장주식등) 기준시가 ○ (국내비상장주식등) 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국외주식등 양도가액 평가 방법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외주식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기준시가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p>*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의 평가 방법 준용</p>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평가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소득령 §180, 법인령 §13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대리인에 대한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을 상시적으로 보관 및 관례적으로 배달하는 자 ○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p><input type="checkbox"/> 국제기준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개정이유〉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소득령 §207의2, 법인령 §138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서 ○ 비과세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서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경정청구서 ○ (좌 동) ○ 거주자증명서 또는 그 밖에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이유>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 (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공익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19의2)

현 행	개 정 안
<p>□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 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회사·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 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자원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광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법인령 §26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 건축물·무형고정자산: 정액법 ○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text{취득가액} \times \frac{\text{당기 채굴량}}{\text{총채굴예정량}}$	<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채굴예정량 변동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좌 동) </div> - 생산량비례법: $\text{미상각잔액}^* \times \frac{\text{당기 채굴량}}{\text{잔여채굴예정량}^{**}}$ <p style="font-size: small;">* 기존 취득가액-누적상각액+증가한 취득가액 ** 당초 채굴예정량(증감 포함) - 누적채굴량</p>

〈개정이유〉 감가상각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
(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범위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	<input type="checkbox"/> 외국 종교단체 제외 ○ (좌 동) -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p> <p>○ 상품·제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p> <p>-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p>	<p><input type="checkbox"/> 조건부·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p> <p>- 상품 등을 조건부·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p> <p>○ (좌 동)</p>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및 법체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법인령 §75④·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등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등, 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시가법 ○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 -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보완</p> <p style="margin-left: 20px;">○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간 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방법 변경* 허용 <p style="margin-left: 20px;">*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p>

<개정이유> 유가증권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법인령 §7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변경 ○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 명확화
(법인령 §80①·§80의2③·§82①·§82의2⑥)

— < 법 개정내용(법인법 §16②) >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이 포함됨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 (합병교부주식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법인의 주식 ○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포함 	<input type="checkbox"/>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 법인의 주식 포함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포함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1)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법인령 §88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금전·자산·용역을 무상·저가로 대부·제공한 행위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른 금전 지급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 ○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는 용역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대상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저가 임대</p>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사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2)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법인령 §92의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채무상환·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적용기간) '25.1.1. ~ '25.12.31. 취득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주택범위 조정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26.12.31. 취득분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13)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법인령 §94의2③·④)

< 법 개정내용(법인법 §57의2)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 변경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①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한계세율}$ ② 국내 \geq 외국 원천징수세율: 1 - 한계세율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액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div>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법인령 §108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수시부과결정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방법</p> <p>○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등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하되 아래 가산세는 적용 제외</p> <p>-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제외되는 가산세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p>

<개정이유> 수시부과 결정시 과세표준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법인령 §120의12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 ○ (모·자법인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톤세제 적용법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모법인 제외) 비영리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input type="checkbox"/>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추가 ○ (좌 동)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 * 「법인세법」 §60의2①(1)에 해당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 ○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법인령 §129의3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적용</p> <p>○ (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p> <p>○ (요건) 국내지점 자본금 - 자본금 추산액* < 0</p> <p>* 본점의 자기자본금 비중까지 고려한 적정 자본금 수준: ①, ② 중 선택</p> <p>① (국내지점 총자산액) ×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 자기자본금/총자산액)</p> <p>②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 ×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자기 자본금/위험가중자산)</p> <p>○ (내용) 자본금 미달액(자본금 추산액 - 자본금)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에 동시에 발생 시 큰 금액 적용</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 지배주주 출자액의 2배(금융업 6배) 초과시 초과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과소자본 지급이자 없는 경우 간주자본세제 적용 배제</p> <p>○ (좌 동)</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인 경우 간주자본세제 미적용</p>

<개정이유> 간주자본세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시 고유번호증 제출근거 명확화
(법인령 §15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시 첨부서류 <input type="radio"/> 고유번호증

<개정이유> 고유번호증 제출 근거 명확화

(1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구체화 (법인령 별표2)

< 법 개정내용(법인법 §94의2·§124) >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신설(최대 1,000만원)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거래처 현황 등
- 미제출·거짓제출 시 과태료 규모는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거래거부 및 매출 전표 거짓발급 금액 × 20% ○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거짓발급 금액 × 20% ○ (가상자산거래사업자)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등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위반: 수입금액별 500만원 ~ 2,0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위반 횟수, 위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감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추가 ○ (좌 동)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거짓제출 시정명령 위반: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u>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u>	<input type="checkbox"/>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u>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u>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p> <p>○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p>	<p><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p> <p>○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p>

〈개정이유〉 공익법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 종사기간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직전 일정기간 (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 (제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 <p>*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 <p>* 도·소매업: 3억, 제조업 1.5억 등</p> <p>**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p>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input type="checkbox"/> 계산방식 합리화 ○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합리화

①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추가(상증령 §2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input type="checkbox"/>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바스켓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추가
(상증령 §33②)

< 법 개정내용(상증법 §44) >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추가
 - 다만,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는 증여추정 적용 제외 ○ 거래소 주식거래 중 시간외 대량매매(당일 종가거래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추정 적용 주식거래 추가 ○ (좌 동)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중 대량·바스켓매매(당일 종가거래 제외)

<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상증령 §31의2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p> <p>*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추가로 받는 배당</p> <p>** 증여이익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액</p> <p>① 증여세 신고기한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소득세액</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② ① 외의 경우: 초과배당금액 × 14~45%*</p> <p>* 추후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p>	<p><input type="checkbox"/>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합리화</p> <p>①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증여세 신고기한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소득세액</p> <p>② (좌 동)</p>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상증령 §32의3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산취득 또는 재산가치 상승 ○ 재산취득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내부정보 및 관련재산 취득, 증여·차입받은 자금으로 취득 ○ 재산가치 증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 사업의 인허가 -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p><input type="checkbox"/>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포함 여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코넥스시장 상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코스닥, 코스피 상장은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분부터 적용

(8)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5㉟)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추 가></p>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공급망안정화기금</p> <p style="text-align: center;">- 첨단전략산업기금</p>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및 첨단전략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재산의 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 상속개시일·증여일 - 감정가액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하는 자산: <u>상장주식</u> ○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가상자산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그 외) 거래소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공시된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p><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평가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u>상장주식 및 가상자산</u> ○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 현실화(상증령 §49의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다음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공무원 3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9명 이내의 사람 ○ (지방국세청) 다음중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공무원 2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u>3명</u>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input type="checkbox"/> 지방국세청 위원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민간위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u>8명 이내</u> - (좌 동)

〈개정이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보완
(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 평가</p> <p>① 일반적인 경우: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80%)</p> <p>* ㉠ : 1주당 순순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3:2 비율로 가중평균</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②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80%)</p> <p>* ㉡ : 1주당 순순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2:3 비율로 가중평균</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③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 등: 순자산가치</p> <p>* 1. 청산절차진행 중 or 사업자 사망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p> <p>2. 사업개시 전의 법인 등</p> <p>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p> <p>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가액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p> <p>5.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보완</p> <p>① (좌 동)</p> <p>- 자산총액 중 주식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u>100%</u>)</p> <p>② (좌 동)</p> <p>-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u>100%</u>)</p> <p>③ (좌 동)</p> <p>* 1. (좌 동)</p> <p>2. (좌 동)</p> <p>3. <삭 제></p> <p>4. <삭 제></p> <p>5. (좌 동)</p>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상증령 §80⑩)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①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②임직원이 되는 경우 ○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지출한 직·간접경비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학교의 교직원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 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예외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개정이유>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 <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중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다음의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 사용자와 친족관계인 자 - 법인의 과점주주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 (좌 동) -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 *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미만 보유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종부령 §4①(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 ○ 다음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얻은 자 -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적용범위 명확화 ○ (좌 동) ○ 다음 사업자가 수탁자로서 소유한 미분양주택을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과세체계 합리화

(5)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총부령 §4①(2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채무상환·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적용기한) '24.3.28. ~ '25.12.31. 취득분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주택범위 조정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 '26.12.31. 취득분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6)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
(종부령 §4의3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종부세 주택 수 산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대체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 소형신축주택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p>- (취득가액) <u>6억원 이하</u></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준공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p> <p>○ (좌 동)</p> <p>- <u>7억원 이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사군구 제외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9억원)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준공후 미분양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종부령 §5의2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납세의무자 *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가능 ① 부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이 높은 자 ② 부부의 지분율이 같은 경우: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간 합의로 선택하는 자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예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p>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령 §40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관</p> <p>○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면제 대상 기관 추가</p> <p>○ (좌 동)</p> <p>○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p>

<개정이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부가령 §3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p> <p>○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수송* 하는 용역</p> <p>* ①국내→국외, ②국외→국내, ③국외→국외</p> <p>○ 운송주선업자가 <u>화주</u>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 운송하는 용역</p>	<p><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p> <p>○ (좌 동)</p> <p>○ <u>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u></p>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부가령 §69⑭)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u>'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u>를 포함 <p>*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p><input type="checkbox"/> 특례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p>※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
(부가령 §69^⑮·^⑯)**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 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input type="checkbox"/> 특례 대상 추가 ○ (좌 동)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 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부가령 §100)

— < 법 개정내용(부가법 §55①) > —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종은 시행령에 전체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p align="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제출 의무 업종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 5px 0;"></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구체화(부가령 §119②)

< 법 개정내용(부가법 §74②)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증빙자료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③ 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⑤ 택배 서비스 등 이용내역 ⑥ 그 밖에 ① ~ ⑤와 유사한 자료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④)

—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3) >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해당 물품의 멸실증인서 등 ○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 (제조장 반입·폐기시) 해당 물품의 환입 확인서 <추 가> ○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 초과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면세담배·원재료)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	<input type="checkbox"/> 증명서류 추가 ○ (좌 동) - (제조장 미반입·폐기시) 폐기사실 확인서류 ○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개소령 부칙)

< 법 개정내용(개소법 §1) >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호)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24일로 규정

<개정이유>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과 시행일 일치

7. 주세법 시행령

(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input type="checkbox"/>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기간 명확화 ○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input type="checkbox"/>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명확화 ○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 증명서 발급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추 가>	<input type="checkbox"/> 첨가 재료 추가 ○ (좌 동) ○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개정이유> 주류 규제 완화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 분야】

(1)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

①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영악화 판단기준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과세 - (원칙) 기타소득 과세 - (예외) 해외이주, 경영악화 등 사유로 해지시 퇴직소득 과세 </div> <input type="checkbox"/>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input type="checkbox"/> 경영악화 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u>20% 이상 감소</u>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조특령 §95)

< 법 개정내용(조특법 §95의2) >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추가 적용

○ 주거를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p> <p>①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p> <p>②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p> <p style="font-size: small;">*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p>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대상주택</p> <p>○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p> <p>*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p>	<p><input type="checkbox"/> 대상주택 범위 확대</p> <p>① 기본공제대상 자녀등*이 3인 이상: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p> <p>*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p> <p>② ① 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p> <p>*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p>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개정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
(조특령 §121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6의2) >

자녀·손자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양자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 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② 20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배제 ③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조특령 §100의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비속에 임차하지 않은 경우: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60% 범위 내에서 국세청 위임 ※ 기준시가의 55% 적용하되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국세청 고시) ○ 직계존비속에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한 간주전세금* ※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미고려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 합리화</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기준시가의 100% 범위 내에서 국세청 고시에 위임*</p> <p style="text-align: center;">*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고려하여 평가</p>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 제한 기준금액 ○ <u>연 185만원</u>	<input type="checkbox"/> 압류 제한 기준금액 상향 ○ <u>연 250만원</u>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분야】

(1)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조특령 §14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코스닥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의 10% ○ (공제요건) 투자일부터 3년간 보유 ○ (공제방식) 투자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중 공제적용 연도 선택 가능 ○ (공제한도) ①, ②, ③의 제한 규정 모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이내 ②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연간 2,500만원) ③ 공제가능 투자액: 인당 누적 투자액 3천만원 이내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인당 투자액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③ 인당 연간 투자액 2천만원 이내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사유 확대(조특령 §93의8)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2)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 허용 사유*</p> <p style="margin-left: 20px;">* 가입 후 3년 내 중도해지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상해·질병(3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 ○ 가입자의 생애최초 주택취득 ○ 가입자의 혼인,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특별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margin: 10px 0;"></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요건(①&②)을 갖추어 해지 ①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 후 다음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②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어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11 신설)

—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5) > —

- 일정소득(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 대상 소상공인, 계좌 요건, 특별중도해지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 단, '25.12.31.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상품 최초 출시('26.6월, 잠정) 당시 34세 초과인 경우라도 허용 ○ (가입 대상 소상공인)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계좌 요건) 계약기간이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 ○ (특별중도해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❷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❶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❷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등

<개정이유> 청년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27) > —

-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적용
-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소득 범위, 신청방법,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①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조특령 §104의24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의 범위) 현금배당(주식배당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 ETF 설정, 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액 포함 <p style="margin-left: 40px;">* (대차주식) 개인주주가 증권사에 대여하는 주식</p>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②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조특령 §104의24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법인 ○ 투자전문회사,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③ 배당성향 등 산정방법(조특령 §104의24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배당성향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배당총액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 (예외)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배당성향 25%로 간주(전년 대비 배당 10% 증가 필요) ○ (예외)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인 경우 배당성향 0%로 간주 </div> <p><input type="checkbox"/> 기준연도 적용요건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 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필요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④ 고배당기업 공시 및 분리과세 신청절차(조특령 §104의24⑦·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거주자의 분리과세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확정신고시 “분리과세신청서” 제출 및 신청 <input type="checkbox"/>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 준용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시장조성자 기준 추가 등(조특령 §115)

< 법 개정내용(조특법 §117) >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다자간매매체결 회사(대체거래소) 개설 시장을 추가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주식 양도에 대한 시장조성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성자) 한국거래소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평가기간) 시장조성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 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성계약 통보)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통보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시장조성자 기준 등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의 효력 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해당 시장조성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10일 내 통보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7)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관련 세부 기준 신설(조특령 §115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시장조성 대상 파생상품 ○ (제외 대상) ❶ 또는 ❷ ❶ 파생상품 총 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비중 5% 이상 ❷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 300조원(선물)·9조원(옵션) 이상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제외 대상 세부기준 신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좌 동) </div> ○ (거래대금·비중 산정) - 정규 거래시간 내 대금으로 한정 - 시장조성자가 거래한 대금은 제외

<개정이유> 파생상품 시장조성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장조성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분야】

(1) 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1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input type="checkbox"/>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명확화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개정이유〉 공제·감면 적용 대상 명확화

(2)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조특령 §5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업과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요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존 기업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개정이유> 제도 남용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조특령 §5②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서, 세액감면 신청서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명세서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명세서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명세서

<개정이유> 납세협력 및 세무행정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범위 구체화(조특령 §7의2①·③·④·⑤)

< 법 개정내용(조특법 §8의3)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에 추가하고, 공제대상 출연금으로 지원가능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무보기금 외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범위 ○ (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 <추 가> ○ (제외) 특수관계인	<input type="checkbox"/> 협력중견기업의 범위 추가 ○ (좌 동) ○ (협력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이 평균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수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견기업 - 수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 - 그 밖에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견기업 ○ (좌 동)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②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기금 출연금 추가(조특령 §100의32^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상생협력 지출액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대출지원 목적 한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 ○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금융회사가 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 §9③·§9⑦·별표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①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② 재료비 ③ 인건비 ④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⑤ R&D용 시설 임차료 ⑥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⑦ 디자인 개발지도비 ⑧ 특허 조사·분석비 ⑨ 클라우드 이용료 <추 가>	<input type="checkbox"/> 클라우드 이용료 적용범위 명확화 및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포함 ○ (좌 동) ⑨ 클라우드 이용료(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⑩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목적으로 한정)

<개정이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AI 학습용데이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조특령 §11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의2③) >

-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 (종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우수인력** 2,000만원)
-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조특령 §11의2·§79의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유형별 계산 <p>○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p> $\frac{\sum \text{매월말 상시근로자 등 수 (연간 합계)}}{\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p>-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 *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세액공제 규정 인용 * 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청년 상시근로자 및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신설) 유형별 계산 <p>○ 해당 과세연도말 기준 상시근로자 등별로 계산한 연환산 근무개월 수 합계</p> $\sum \frac{\text{상시근로자 등별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p>-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p> <p>-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p>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전에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8)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중복 배제(조특령 §12③·§12의2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민간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대상 ○ 민간모펀드의 운용사인 벤처 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집합투자업자* *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납입자본 20억원 이상 등)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합리화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 제도만 적용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2의2③)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의2②) >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대상 출자금액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출자금액)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 중 내국법인의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 공제금액 계산방식 $ \begin{array}{l} \text{벤처투자목적회사가} \\ \text{취득한 벤처기업의} \\ \text{주식 또는} \\ \text{출자지분의} \\ \text{취득가액} \end{array} \times \frac{ \begin{array}{l} \text{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 \text{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 \text{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재산 총합계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 \text{출자받은 금액과 차입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end{array} $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조특령 §17①·§26의4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u>7천만원 초과</u>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u>7천만원 이상</u>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8천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총급여액 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8천만원 이상</u> ○ (좌 동)

〈개정이유〉 공제제도 적용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제금융기구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8)

— < 법 개정내용(조특법 §21) > —

- 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배당·주식양도·기타소득 비과세
 - 비과세 대상 국제금융기구, 비과세 소득 범위, 비과세 신청절차·경정청구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대상 국제금융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제은행(B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제2조제1항제11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타소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 절차 준용 <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적용 관련 경정청구 절차 준용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①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 합리화(조특령 §21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정의</p> <p>○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p> <p>-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p> <p>- 신성장·원천기술 외 다른 기술 연구개발 병행사용하는 경우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적용범위 확대</p> <p>○ (좌 동)</p> <p>- (좌 동)</p> <p>-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p> <p>○ (좌 동)</p> <p>- (좌 동)</p> <p>-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p>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령 §21⑩·⑬)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의 사후관리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기준) 해당 기간 동안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 중 해당 연구개발* 업무 사용시간이 50% 미초과시 다른 목적 전용(轉用) 간주 <p>* 국가전략기술 시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신성장 등 시설: 신성장 등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시 추정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p>* 일반시설 공제세액과의 차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신고시)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총 연구개발업무 시간에 한시적으로 사업화시설로 활용하는 시간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연구개발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하는 분부터 적용

(13)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 확대 및 정비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22의11①)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7①) >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p> <p>○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u>중소·중견기업</u></p> <p>- (제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p>	<p>□ 적용대상 확대</p> <p>○ <u>내국법인(대기업 포함)</u></p> <p>- (좌 동)</p>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조특령 §22의11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비용</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공제대상비용(법 §25의7①(2)) = (a)×(b)/(c)</p> <p>(a)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p> <p>(b) 시행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p> <p>(c)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p> </div> <p>○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②)</p> <p>- 영상콘텐츠 제작 인건비, 촬영·조명비 등에서 국가·지자체 출연금 및 광고·홍보비 등을 제외한 비용</p>	<p><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비용 계산시 제작비용 명확화</p> <p>○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으로 조달한 비용</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제작비용 × $\frac{\text{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text{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 \text{그 외 투자금})}$</p> </div>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1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조특령 §22의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8)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중소기업 / 기타 : 15% / 10%
 - 공제대상자, 웹툰콘텐츠, 공제비용, 공제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자) 내국인으로서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구체적 요건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input type="checkbox"/> (웹툰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input type="checkbox"/> (공제비용) 웹툰콘텐츠 제작자 인건비 등 (구체적 비용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액, 홍보비용 등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및 가속상각 범위 구체화(조특령 §25의5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8의5) >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가속상각* 신설
 - *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투자비용을 조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구체적인 대상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스마트공장 가속상각 대상자산 및 가속상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건축물 및 무형자산(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은 제외 ○ (가속상각 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구체화(조특령 §26의8④)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8①) >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

○ 구체적인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중견) 5명, (대기업) 10명

<개정이유> 중견·대기업 고용 증대 유인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4.12.31. 또는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② 상시근로자 계산 간소화(조특령 §26의8⑥)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p> <p>* 상시근로자, 청년등상시근로자 유형별 계산</p> <p>○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p> $* \frac{\sum \text{매월말 상시근로자 등 수 (연간 합계)}}{\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p>-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p> <p>*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p>	<p><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간소화</p> <p>○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p> $* \sum \frac{\text{상시근로자 등별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p>▶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p> <p>▶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p>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조특령 §26의8③)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 (좌 동) - 해당 과세연도에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3.12.31. 또는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17)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구체화(조특령 §35의6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8의4) >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과세이연 종료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p> <p>*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p> <p>○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frac{\text{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 수}}{\text{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직전사업연도까지 보유한 주식 수}}$ </td> </tr> </table> </div> <p>○ 과세이연 종료(전액 익금산입)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frac{\text{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 수}}{\text{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직전사업연도까지 보유한 주식 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frac{\text{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 수}}{\text{현물출자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중 직전사업연도까지 보유한 주식 수}}$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지방이전 감면한도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60·§60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63·§63의2)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 등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정세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투자누계액)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사업용 자산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p> <p><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정의)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p>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정세액 계산방법)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 감소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p> <p style="margin-left: 20px;">* 상시근로자 수 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p>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등 범위)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 인용</p> <p style="margin-left: 20px;">* (상시근로자)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상시근로자</p>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p> <p style="margin-left: 20px;">* $\sum \frac{\text{상시근로자 등별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quad (\text{전체인원 합계})$</p> <p style="margin-left: 20px;">·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p> <p style="margin-left: 20px;">·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p>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9) 본사 지방이전 시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제고(조특령 §60의2⑬)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액 추징 ○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본사업무 총 종사자 수 대비 수도권 내 본사업무 종사자 비율이 <u>50% 이상</u> 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감면액 추징 요건 강화 ○ (좌 동) - <u>40% 이상</u>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전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요건 규정(조특령 §99의8⑧)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9) >

- 위기지역 내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요건 신설
 - 구체적인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억원 이상 투자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개정이유> 위기지역 창업 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1)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산세조문 정비(조특령 §100의19③·§100의2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p> <p>* 「법인세법」 §75의3·§75의5~§75의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가산세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p>* 「법인세법」 §74의2</p>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가산세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① 환류대상인 배당액 범위 구체화(조특령 §100의32㉔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2)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확대

○ 환류대상 배당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환류대상에 포함되는 배당액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 * 직전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결산배당) 등 -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조특령 §100의32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2) >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확대
- 기업소득 중 환류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범위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투상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계산식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u>70%</u>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u>15%</u> - (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의 <u>70%</u>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의 <u>15%</u> 	<input type="checkbox"/> 기업소득 비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80%</u> ○ <u>30%</u>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③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조특령 §100의32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방법</p> <p>○ (기업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p> <p>-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 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차감항목) 이월결손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등</p> <p>*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보험사 손실 보전준비금 등</p>	<p><input type="checkbox"/>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 추가</p> <p>○ (좌 동)</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27년부터 적용) ▪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 <p>- (좌 동)</p>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④ 환류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조특령 §100의32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의 범위</p> <p>○ 제외되는 상시근로자</p> <p>- 임원, 특수관계자 등</p> <p>- <u>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u></p> <p>○ 근로소득 증가액 계산방법</p> <p>-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u>근로소득</u>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p>	<p><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계산기준 명확화</p> <p>○ (좌 동)</p> <p>-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비과세소득 제외</p> <p>○ (좌 동)</p> <p>-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비과세소득 제외</p>

〈개정이유〉 환류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2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세액공제 ○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 세액공제 기준금액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 (좌 동) ○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2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인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2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가치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1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도소득세(예정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2만원</td> </tr> </table>	소득세	2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1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인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1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가치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5천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도소득세(예정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able>	소득세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소득세	2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소득세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조특령 §104의16)**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16) > —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 및 유가증권의 경우 대체취득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유가증권의 구체적 범위, 사후관리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범위</p> <p style="margin-left: 20px;">* 대체취득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p> <p>○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국내투자형 펀드 등*</p> <p style="margin-left: 20px;">*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펀드</p>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p> <p>○ 대체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시 처분한 유가증권의 비율만큼 익금산입</p> <p style="margin-left: 20px;">- 다만, 처분가액을 다른 유가증권의 대체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p> <p style="margin-left: 20px;">* (전부 사용) 전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일부 사용) 대체취득에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익금 산입</p>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p>□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p> <p>*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p> <p>○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p>○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p>*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p> <p>○ (좌 동)</p> <p>○ 부분복귀 범위 합리화</p> <p>- (좌 동)</p> <p>-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p>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의21㉔)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소득</p> <p>○ 완전복귀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 매출액}}{\text{국내매출액}}$</p> <p>○ 부분복귀</p> <p>-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 매출액}}{\text{국내매출액}}$</p> <p>-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 축소 생산량}}{\text{국내매출액}}$ 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p> <p>○ (좌 동)</p> <p>○ 축소완료 전에도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p> <p>- (좌 동)</p> <p>-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p> <p>$\text{복귀 후 소득} \times \frac{\text{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text{국내매출액}}$ (산업부 장관 인정·확인)</p>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정세액 계산방법 신설
(조특령 §104의21⑦·⑩)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24④) >

- 추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 구체적인 추정사유 및 추정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정사유 및 추정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추정사유 및 추정금액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2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의27)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0) >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적선사 이용에 대한 기본공제 및 원양 국적선사 이용에 대한 추가공제로 개편*
 - * (종전)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인 경우 공제 적용(1%)
 - (개정)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0.5%) 적용 + '원양 물동량'이 25%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1%) 적용
-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원양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원양노선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는 연근해를 제외한 지역 □ 해상물동량 및 운송비용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물동량)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물동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으로 발생한 물동량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된 물동량 ○ (운송비용) 해상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개정이유> 선·화주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7)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 명확화
(조특령 §116의35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p> <p>○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u>중복자산</u>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사후관리 배제)</p>	<p><input type="checkbox"/>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범위 명확화</p> <p>○ <u>중복자산</u>(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p>

〈개정이유〉 사후관리 합리화

(28)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범위 확대
(조특령 §130⑦)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6) >

기업업무추진비 추가손금 적용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고, 손금산입 한도 확대(10→20%)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구입을 입증하는 자료* <p style="margin-left: 40px;">* 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등</p>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p> <p>*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p> <p>○ 14개 분야* 273개 기술</p> <p>*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세부기술 대상 확대</p> <p>○ 14개 분야 284개 기술</p> <p>- 11개 신설, 2개 확대</p> <p>▪ (신설) 11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헬스(1)</td> <td>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환경(1)</td> <td>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융복합소재(1)</td> <td>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첨단 소부장(4)</td> <td>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소중립(4)</td> <td>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td> </tr> </tbody> </table> <p>▪ (확대) 2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탄소중립(2)</td> <td>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 작동 온도범위 확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 작동 온도범위 확대</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바이오·헬스(1)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에너지·환경(1)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융복합소재(1)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첨단 소부장(4)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탄소중립(4)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2)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 작동 온도범위 확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 작동 온도범위 확대
분야	세부기술																
바이오·헬스(1)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에너지·환경(1)	이차전지 제조 공정 염폐수 재활용 기술																
융복합소재(1)	고융점 금속 기반 4N급 염화물 또는 불화물 전환 기술																
첨단 소부장(4)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기술 기능화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고성능 실리카 에어로겔 단열재 제조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탄소중립(4)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기술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 친환경 냉매 개발 기술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활용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2)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소재 → 작동 온도범위 확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 작동 온도범위 확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30)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p> <p>*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p> <p>○ 8개 분야* 78개 기술</p> <p>*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7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⑧인공지능 5개</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세부기술 대상 확대</p> <p>○ 8개 분야 81개</p> <p>- 3개 신설, 2개 확대</p> <p>▪ (신설) 3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도체 (1)</td> <td>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래형 운송이동 (2)</td> <td>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LNG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td> </tr> </tbody> </table> <p>▪ (확대) 2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도체 (1)</td> <td>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 (1)</td> <td>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LNG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수소 (1)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LNG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												
수소 (1)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 청록수소 기술 포함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분야】

**(1)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조특령 §27의6㉔)**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상장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합산적용* 한도</p> <p>* 당초 증여 주식의 과세가액 + 상장에 따른 이익</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세율 :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 기업영위기간별 한도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div> <p>○ 100억원</p>	<p><input type="checkbox"/>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p> <p>○ 기업영위기간별 공제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개정이유〉 기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조특령 §67③)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경작하면서 다음의 기간 내 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농지 先 양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후 1년 내 신규 농지 취득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후 2년 내 신규 농지 취득 - 신규 농지 先 매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후 1년 내 기존 농지 양도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농지 매수 후 기존 농지 양도기한 연장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 수용시 취득 후 2년 내 기존 농지 수용

<개정이유> 농지대토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취득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 마련(조특령 §68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71의2)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요건</p> <p>*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① (소재지)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광역시 내 군은 제외) - 종전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p>② (가액 기준) 기준시가 4억원 이하</p>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7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대토보상 받은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p> <p>*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협의매수수용 등)하는 토지등의 양도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p> <p>** 감면세액(대토보상과 채권보상 감면세액의 차액) 또는 이연받은 금액 상당 세액 납부</p> <p>①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p> <p>②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전매금지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함)</p> <p>③ 대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내 상속·증여한 경우</p> <p>④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사후관리 배제</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단,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배제</p>

<개정이유>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조특령 §97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대상)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 (양도차익 계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구체적 계산방식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임대기간 양도차익 계산방법 추가 ○ (좌 동)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세액감면 계산방법* 준용 $* \text{양도차익} \times \left(\frac{\text{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 \text{취득시 기준시가}}{\text{양도시 기준시가} - \text{취득시 기준시가}} \right)$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6)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조특령 §97의9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p> <p>* 양도소득세액의 10% 감면</p> <p>○ (대상)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양도한 토지</p> <p>○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계산)</p> <p>-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경우:</p> <p>▪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양도가액 계산방법 보완</p> <p>○ (좌 동)</p> <p>○ 안분계산 방법 보완</p> <p>* 현행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 준용</p> <p>- (좌 동)</p> <p>▪ 토지·건물의 구분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p> <p>- (예외) 구분가액 - 안분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p> <p>①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p> <p>② 함께 취득 후 건물은 철거,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p>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및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령 §97의9 신설)

<p>< 법 개정내용(조특법 §97의9 신설) ></p>
<p><input type="checkbox"/> 내국인이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신설</p> <p>○ 이연세액 납부방법,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p> <p>* 리츠가 법정시한 내에 공모하지 않거나, 리츠 공모 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세부내용</p> <p>○ (납부이연 및 과세이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다른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 납부이연 - (법인) 양도차익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p>○ (이연세액 납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납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주식처분비율만큼 납부(익금산입) - (전부 납부) 주식 처분비율 합계가 50% 이상 또는 전부 처분, 리츠의 해산인 경우 등 전부 납부 <p>○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이연 또는 과세이연된 세액 × 일수* × 22/100,000</p> <p>*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p>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과세특례 가액기준 상향(조특령 §98의8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미분양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주택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u>6억원 이하</u>	<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 기준 상향 ○ (좌 동) - <u>7억원 이하</u>

<개정이유> 준공후미분양 해소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조특령 제104조의18④ 신설)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19) >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로 감면된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음

○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토지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받지 못하더라도 종부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p> <p style="margin-left: 20px;">*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p> <p>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p> <p>② 「주택법」에 따른 허가인가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p> <p>③ 그 외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p>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분야】

(1)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의무 강화(조특령 §110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공급자 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취득가액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필수 기재사항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개정이유〉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조특령 §113의3 신설)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15의2) >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 '26.4.1.~'28.12.31. 기간 중 주세율 30% 감면

- 증류주류·기타주류 중 감면 대상 주류의 범위, 감면기준이 되는 알코올 도수, 감면한도(반출량)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의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 (감면한도) 400k1

<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99의9)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10) >

- 폐업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재기 요건에 '특수형태근로 3개월'을 추가
 -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자연가산세 면제
 - 특수형태근로자의 구체적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재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1개월 이상 사업 ○ (근로자)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② 월 100만원 이상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특수형태근로자 재기 요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특수형태근로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납부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생계형채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4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15) >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채납액에 대해 납부의무 소멸
 -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채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폐업하기 전 영세자영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무재산 등 징수곤란 여부의 기준일이 되는 실태조사일, 징수곤란채납액으로 인정되는 채납액, 신청 대리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적용 대상·기준·절차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 ○ (실태조사일)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 ○ (징수곤란 인정 채납액) 채납액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채납액 징수가능 재산의 평가 금액의 140% ② 선순위 담보채권(국세의 법정 기일 전에 등록된 전세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 등) ○ (신청대리)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 (통지기간) 소명기간, 재산평가기간은 6개월 통지기간에서 제외 ○ (소멸순서) 신청 순서에 따라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개정이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등(조특령 §135)

< 법 개정내용(조특법 §142④) >

각 부처의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 목표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 구체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의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 정책목적에 대한 분석 ②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연도별 목표치, 효율성·형평성 측면 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③ 예상 감면액, 유사 재정·조세지출,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 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강화 방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 - 세수감 보완대책 비교표(재정중립총괄표) 작성 ② 평가 관련 조사·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 ③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

<개정이유>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구체화(조특령 §135의4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42의3) >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재경부) 및 자료제출(관계기관→재경부) 의무 신설
-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자료제출기관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제출시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 작성방법) 직전년도 감면규모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등 ○ (결산서 제출)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 제출 ○ (자료제출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개정이유> 조세특례 관리 내실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p>□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등기우편 ○ (예외) 일반우편 <p style="margin-left: 40px;">- 고지세액 <u>50만원 미만</u> & ❶~❹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❷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❹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p>□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p style="margin-left: 40px;">- <u>100만원 미만</u></p> <p style="margin-left: 40px;">- (좌 동)</p>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신청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신청간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상) 고지세액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국기령 §27의4)

- < 법 개정내용(국기법 §21·§47의4·§47의5) > —
- 납부지연 가산세 제도 정비
 - ①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일→월 단위) 하면서 구체적인 '가산세율'을 시행령에 위임
 - ②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 가산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p>*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좌 동)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p>□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p> <p>*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p>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4)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국기령 §48의2②)

< 법 개정내용(국기법 §59의2)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고충민원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or ②의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 ① 경정 등의 청구(법 §45의2) ②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①~⑤는 고충민원 제기 불가 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li style="padding-left: 40px;">*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③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④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된 사항 ⑤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고충민원 범위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margin-bottom: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농업 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조업 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임대업 등</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억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기준 삭제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margin-top: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국징령 §3의2 신설)

—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의2) > —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등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

○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li style="margin-left: 40px;">* (「국가공무원법」 §33) 피성년후견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방법) 주소지·사업장 등 방문* 확인 <li style="margin-left: 40px;">* 방문 사실은 사전에 안내하며, 방문 시 관련 증표 제시 ○ (교육) 실태확인 방법·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 ○ (감독) 안전·업무수행 등 주기적 지도·점검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②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국징령 §108 신설)

— < 법 개정내용(국징법 §116) > —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금액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금액 ○ Max [(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 1인의 실태확인 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실태확인 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산정함

<개정이유> 납세자 정보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8)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국징령 §74의2 신설)

—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3) > —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상자산 매각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 및 절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가상자산 매각대금 × 수수료율(시행규칙) ○ (절차) 공매 대행 절차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대행의뢰(§66), 압류재산인도(§67), 매수대금 인계(§70), 공매 대행의 세부사항(§73) 등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제외 대상 ①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연도말 당시 체납액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③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④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① (좌 동) ▪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 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②~④ (좌 동)

〈개정이유〉 체납 징수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국징령 §106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실증명 등(법무부 보유) ○ 주민등록 등본 등(행안부 보유) ○ 토지대장 등(국토부 보유) ○ 선박원부(해수부 보유) ○ 법인등기사항증명 등(대법원 보유)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보유)

<개정이유> 체납 징수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10. 세무사법 시행령

(1)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방식 개선(세무사령 §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무사 시험 합격자 공고 ○ 관보 공고	<input type="checkbox"/> 공고 방식 개선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험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규정 마련(세무사령 §32)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5) >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금지 근거 마련

* 피성년후견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 사무직원 채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법령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채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정경제범죄법(사기, 공갈,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폭력행위처벌법(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③ 마약류관리법 ④ 형법(사기, 준사기, 부당이득 등)

<개정이유> 세무사 사무직원 채용 합리화

<적용시기> '26.6.24.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사·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 보완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7의2) >

세무사 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① 결격사유 조회를 국세청·세무사회에 위임·위탁(세무사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권한의 위임·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업무 ○ (한국세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 등록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 - 세무사 등록·취소 통지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법인 보전명령 -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접수 -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한국세무사회) 위탁 권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 (국세청장) 위임 권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세무사 등의 결격사유 조회

<개정이유> 세무사·사무직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세무사) '25.12.23.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무직원) '26.6.24. 이후 조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결격사유 확인 사무 추가(세무사령 §34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 자격에 관한 사무 ○ 세무사 자격 시험에 관한 사무 ○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세무대리 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처리 대상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개정이유> 세무사·사무직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세무사) '25.12.23. 이후 조 회 를 요 청 하 는 분 부 터 적용
 (사무직원) '26.6.24. 이후 조 회 를 요 청 하 는 분 부 터 적용

(4)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기준 마련(세무사령 §36)

< 법 개정내용(세무사법 §12의7) >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을 신설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금지 등

○ 광고의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광고의 방법·매체 등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기의무)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 (그 밖의 광고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적 관계 암시 광고 ②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③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게시 등 ④ 판결·처분 예측 광고 ⑤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⑥ 국세청장이 정하는 ① ~ ⑤와 유사한 광고 ○ (사실 확인) 국세청장은 광고 금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세무사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제공

<개정이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 조성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6.24. 이후 광고분부터 적용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국조령 §101)

현 행	개 정 안
<p>□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판단기준</p> <p>① 그룹 간 합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p>②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피인수기업)과 그룹 또는 기업(인수기업) 간 합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 	<p>□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p> <p>① (좌 동)</p> <p>②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 간 합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 (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② 대상조세의 배분범위 확대(국조령 §111①·②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7①) >

글로벌최저한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다른 구성기업*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업에도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배분하도록 함

* 다국적기업그룹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법인과 고정사업장 등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p> <p>① 본점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고정사업장에 배분</p> <p>② 투시과세기업 대상조세 중 적격지분보유자 귀속분: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p> <p>③ 주주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혼성기업 귀속분: 혼성기업에 배분</p> <p>④ 적격지분보유자에 소유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대상조세 중 역혼성기업 귀속분: 역혼성기업에 배분</p> <p>⑤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p>	<p><input type="checkbox"/>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비구성기업)에도 대상조세 배분</p> <p>○ 소득의 원천이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로 ① ~ 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에 배분</p> <p>* 법 §77에 따른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p> <p>○ 소득의 원천이 비구성기업으로 ⑦, 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구성기업에 배분</p> <p>*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p>

⑥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배당수익 관련 대상조세:
배당지급 구성기업에 배분

⑦ 주주구성기업에 계상된
통합형 피지배 외국법인
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피지배 외국법인에 배분

* '25.12.31. 이전 개시한 회계연도까지 적용

⑧ 특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납부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대상조세: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제도 세부내용은 시행규칙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혼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령 §111①(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혼성기업의 정의: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p> <p>① 설립지국에서 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② 지분보유자 소재지국은 기업의 소득·이익을 지분보유자에 귀속시켜 과세</p>	<p><input type="checkbox"/> 정의 명확화</p> <p>① (좌 동)</p> <p>- 설립지국에 법인세제가 없는 경우, 국조령 §108②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p> <p>* (예) 설립지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p> <p>② (좌 동)</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④ 대상조세 중 이연법인세 배분방법 마련(국조령 §111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방식 규정</p> <p>○ (배분대상)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p> <p>- 단,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는 제외</p> <p>○ (배분방법) ① 또는 ② 중 선택(5년 선택)</p> <p>① 해당 이연법인세가 발생된 소득의 원천에 배분 ※ 대상조세 배분액 및 배분한도 산출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p> <p>② 해당 이연법인세를 배분하지 않고 제거 ※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서 대상조세 배분</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 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정의 명확화(국조령 §11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재계산 등으로 증가한 이전사업연도의 추가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로서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정대상조세 예상액*에서 조정대상조세를 차감한 값 <p>*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p> <p>①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0</p> <p>②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 조정대상조세 예상액</p>	<p><input type="checkbox"/> 용어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좌 동)</p> <p>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값</p> <p>* 해당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합계액에 15%를 곱한 금액</p> <p>①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0</p> <p>② 해당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합계 예상액</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⑥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명확화(국조령 §125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법정배분방법</p> <p>* 법정배분·지정배분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 가능(법 §73⑤)</p> <p>○ 국내구성기업별 배분비율</p> $= \left(\frac{\textcircled{1}}{\textcircled{2}} \times \frac{50}{100} \right) + \left(\frac{\textcircled{3}}{\textcircled{4}} \times \frac{50}{100} \right)$ <p>①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p> <p>- 단,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1로 간주</p> <p>②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p> <p>③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액</p> <p>④ 모든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액</p>	<p><input type="checkbox"/>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배분비율 명확화</p> <p>○ (좌 동)</p> <p>② 최종모기업 소재위치별 구분</p> <p>- (국내 소재 시) 모든 국내 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에 1을 더한 값</p> <p>- (해외 소재 시) 모든 국내구성 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 합계</p> <p>○ (좌 동)</p>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내구성 기업간
배분방식 합리화

⑦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특례 용어 명확화
(국조령 §133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p> <p>①~③ 중 하나를 만족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p> <p>① 귀속소득에 대해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저한세를 이상으로 과세되는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p> <p>②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자연인</p> <p>③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p>	<p><input type="checkbox"/> 용어 명확화</p> <p>① (좌 동)</p> <p>② (좌 동)</p> <p>③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설립·운영되며 5% 이하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⑧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국조령 §138①·⑥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80①·③) >

<input type="checkbox"/>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간소화된 산식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이 15~17%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26.12.31. 이전 개시, '28.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한**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 *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환기 적용면제 ○ (요건) '24~'26년의 간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업연도</th> <th>간이 실효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15%</td> </tr> <tr> <td>2025년</td> <td>16%</td> </tr> <tr> <td>2026년</td> <td>1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추 가 ></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input type="checkbox"/>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규정 ○ (요건) '27년 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업연도</th> <th>간이 실효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 rowspan="3">좌 동</td> </tr> <tr> <td>2025년</td> </tr> <tr> <td>2026년</td> </tr> <tr> <td>2027년</td> <td>1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기한) '27.12.31. 이전 개시, '29.6.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1년 연장)</p>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좌 동	2025년	2026년	2027년	17%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좌 동																
2025년																	
2026년																	
2027년	17%																
<input type="checkbox"/>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규정 ○ (기한)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합의내용('26.1.5.) 반영

⑨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방법 보완(국조령 §13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최초적용연도·이후 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p> <p>* 최초적용연도에는 재무제표상 계상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이 원칙</p> <p>○ 회계상 인식기준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도 산입</p> <p>○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산입 제외</p> <p>① '21.12.1.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p>	<p><input type="checkbox"/>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입대상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명확화</p> <p>○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산입</p> <p>○ 산입 제외요건 명확화</p> <p>①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근거 추가</p> <p style="margin-left: 20px;">i) 정부조치</p> <p style="margin-left: 20px;">*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p> <p style="margin-left: 20px;">ii) 법인세제의 신규 도입</p> <p style="margin-left: 20px;">- 회계·세무상 장부가액 차이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도 포함</p> <p style="margin-left: 20px;">- 법인세제 최초 시행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p>
<p><추 가></p>	

<p>②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관한 이연법인세자산</p> <p><추 가></p> <p><신 설></p>	<p>② 이연법인세자산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발생하지 않은 세무상 비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 포함 * (예) 자산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세무상으로 인정함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p>○ 산입 제외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된 이연법인세자산이 일정기간 내 환원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20%까지 산입 가능 * 적용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 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①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국조령 §125의3②·③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3) >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준용
- 단, 글로벌최저한세에서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소재 타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 중 일부는 내국추가세 계산 시에는 제외
 - 제외되는 대상조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소재하는 본점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 귀속되는 부분 ○ 국외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등의 소득 ② 국내구성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구성기업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포함 가능 ③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구성기업의 소득 <input type="checkbox"/> 국내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 배분 선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한 대상조세는 별도의 배분한도* 계산 없이 전액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 가능(시행규칙) * 글로벌최저한세에서는 수동소득의 일정비율을 배분한도로 규정하고, 한도 내에서만 대상조세 배분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국조령 §125의6 신설)

—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5⑤) > —

소재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중 내국추가세를 적용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p style="margin-left: 40px;">*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떠한 국가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p>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규정(국조령 §125의8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의7②) >

-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법정배분과 지정배분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법정배분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의 법정배분방식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투자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계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내국추가세액배분액 = $A \times B \div C$</p> <p>A: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합계액</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인해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내국추가세액 재계산으로 인해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발생 시: 각 구성기업의 해당 과거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 ②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시: 각 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차액에 비례하여 배분 <p>* 글로벌최저한세결손 × 최저한세율(15%)</p>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령 §142)

< 법 개정내용(국조법 §84) >

- 내국추가세에 따라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배분액과 동일한 신고·납부 규정을 적용
 -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 신고를 위한 서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및 배분방식별 추가 서류 제출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② (지정배분)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방법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 (국조령 §126·§131·§135·§137·§138)

< 법 개정내용(국조법 §74·§75·§77·§79·§80) >

-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투자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적용면제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각종 특례규정은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적용제외 특례*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소재지국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 평균이 각각 1천만,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 0으로 간주 →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적용 ○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특례*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기업그룹이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다국적기업그룹 →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간주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적용 ○ 투자구성기업의 별도계산* 및 과세분배방식** 특례 (§135·§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구성기업만을 별도 단위로 계산하며, 추가세액 계산 시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 귀속분만 계산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을 주주구성기업으로 분배 시, 주주구성기업이 15% 이상 과세가 예상되면 해당 분배금은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으로 귀속 ○ 적용면제 특례* 배제사유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간이 실효세율, 초과이익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시 전환기('26.12.31. 이전 개시)에 한하여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 과세당국이 적용면제와 관련하여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 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p><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특례 적용</p> <p>○ (좌 동)</p>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수시부과의 사유 등(국조령 §143)

< 법 개정내용(국조법 §85) >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통지 등과 관련한 규정은 내국추가세도 동일하게 적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당국 결정·경정한 추가세액 배분액을 해당기업에 통지할 경우 ○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 첨부 ※ 단,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 없다는 내용을 통지	<input type="checkbox"/> 내국추가세액배분액 결정·경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관세사법 시행령

(1)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 명확화(관세령 §1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용역의 범위</p> <p>○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그 생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는 물품</p> <p>○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p> <p>*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용역 범위에 개발 추가</p> <p>○ (좌 동)</p> <p>○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p> <p>*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p>

〈개정이유〉 관세평가 기준 명확화

(2)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관세령 §61③·§70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무역위는 조사개시 결정 3개월 이내(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재경부장관에게 예비조사 결과 제출 ○ (잠정조치) 재경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 후 1개월 이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일 범위 내 연장 가능</u> 	<input type="checkbox"/> 잠정조치 결정 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u>1개월 범위 내</u>
<input type="checkbox"/>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부 장관이 부과일 1년 경과 후 종료일 6개월 이전 요청 ○ (재심사) 재경부장관은 재심사 필요 여부를 2개월 이내 결정 (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관보게재)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input type="checkbox"/> 재심사 결정 기간 예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결정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잠정조치)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된 덤핑조사 분부터 적용
(재심사) 영 시행일 이후 요청된 재심사 분부터 적용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령 §113②)**

< 법 개정내용(관세법 §89③)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3년 이내 → 10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 <u>3년 이내</u>	<input type="checkbox"/> 지정기간 연장 ○ <u>10년 이내</u>

<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관세령 §141의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제외 대상 ① 최근 2년간의 채납액 납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 / (A+B)$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연도말 당시 채납액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② 회생 계획에 따라 채납된 세금을 납부 중인 경우 ③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①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월 1일부터 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②~③ (좌 동)

<개정이유> 채납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5) 면세품 외국 미반출 시 회수 절차 합리화(관세령 §213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세판매장(면세점) 관리 등 ○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등 기록·유지 등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input type="checkbox"/>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 구체화 ○ (좌 동) ○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판매한 면세품이 미반출되는 경우 해당 면세품 회수 (단,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반출된 경우 회수 제외*) *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 이내의 물품 등으로 한정

<개정이유>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 정비(관세령 §22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수단의 종류, 포장의 종류·수량, 운송기간 등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신고(신청)인 정보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신고(신청)인 정보 ○ 위험물품 해당 여부 ○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 (승인신청에 한정)

<개정이유> 보세운송신고 항목 체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을 신고·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령 §243의2 신설)

— < 법 개정내용(관세법 §235의2) >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등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 적용 가능

* 탁송품·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 간소한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 침해의심통보)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 (자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자) 통관보류 희망 시 상표권 침해 입증 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세관장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상표권 보호 효율화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 신고를 하거나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청장의 마약류등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관세령 §263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의 정보 요구 대상</p> <p>○ <u>마약류</u> 범죄 관련 정보</p> <p>- (우편물) 마약류가 반출입된 국제우편물 수발신 정보*</p> <p>* 수취인 성명·주소, 배송조회 IP주소 등</p> <p>- (범죄자) 최근 10년 마약류 관련 범죄자* 정보</p> <p>* (범죄유형) 밀수, 유통 (신상) 국민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외국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경력) 수형자(징역·금고·구류) 경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구 정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교부</td> <td>국외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 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무부</td> <td>강제퇴거된 외국인 신상정보 및 처분내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검찰청</td> <td>국내 범죄경력 국민·외국인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추 가></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추 가></td> </tr> </tbody> </table>	기관	요구 정보	외교부	국외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 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법무부	강제퇴거된 외국인 신상정보 및 처분내역	검찰청	국내 범죄경력 국민·외국인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추 가>		<추 가>		<p><input type="checkbox"/> 임시마약류·원료물질 포함 및 정보 수집 범위·기관 확대</p> <p>○ <u>마약류등</u>*</p> <p>* 마약류, 임시마약류, 원료물질</p> <p>- (좌 동)</p> <p>- 범죄유형, 범죄경력 확대 신상정보 구체화</p> <p>* (범죄유형) 투약, 밀조 추가 (신상) 국민주민등록번호 외국인영문성명·여권번호 추가 (범죄경력) 유죄확정(징역·금고·구류·벌금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요구 정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무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검찰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방부</td> <td>군사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식약처</td> <td>마약류 과다 처방 관련 수사 의뢰한 국민 신상정보</td> </tr> </tbody> </table>	기관	요구 정보	외교부	(좌 동)	법무부	(좌 동)	검찰청	(좌 동)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식약처	마약류 과다 처방 관련 수사 의뢰한 국민 신상정보
기관	요구 정보																								
외교부	국외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 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법무부	강제퇴거된 외국인 신상정보 및 처분내역																								
검찰청	국내 범죄경력 국민·외국인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추 가>																									
<추 가>																									
기관	요구 정보																								
외교부	(좌 동)																								
법무부	(좌 동)																								
검찰청	(좌 동)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국민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																								
식약처	마약류 과다 처방 관련 수사 의뢰한 국민 신상정보																								

<개정이유> 마약류 차단 업무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관세령 별표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통고처분* 금액 기준</p> <p>*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 처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징역·벌금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p> <p>○ 벌금 최고액의 30%</p> <p>- 다만, 별표4 해당 범죄*로서 물품원가가 벌금 최고액 이하인 경우 물품원가의 30%</p> <p>* 명의대여죄 등</p>	<p><input type="checkbox"/> 물품원가 기준 통고처분 대상에 명의사용죄 추가</p> <p>○ (좌 동)</p> <p>- 별표4 해당 범죄에 명의사용죄 추가</p> <p>* 명의대여죄, 명의사용죄 등</p>

〈개정이유〉 통고처분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 항공사 과태료 도입(관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p> <p>○ 승객예약자료* 전부 과실로 미제출 시 과태료</p> <p>* 국적,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21개 항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간 (1년간)</th> <th>1~5회</th> <th>6~10회</th> <th>11회~</th> </tr> <tr> <td>과태료 (회당)</td> <td>25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구간 (1년간)	1~5회	6~10회	11회~	과태료 (회당)	25만원	50만원	100만원	<p><input type="checkbox"/> 승객예약자료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p> <p>○ (좌 동)</p> <p>○ 일부 미제출(미제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항공사 과태료</p> <p>* 미제출 비율 계산 방법 관세청장 고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간 (1년간)</th> <th>1~5회</th> <th>6~10회</th> <th>11회~</th> </tr> <tr> <td>과태료 (회당)</td> <td>10만원</td> <td>25만원</td> <td>50만원</td> </tr> </table>	구간 (1년간)	1~5회	6~10회	11회~	과태료 (회당)	10만원	25만원	50만원
구간 (1년간)	1~5회	6~10회	11회~														
과태료 (회당)	25만원	50만원	100만원														
구간 (1년간)	1~5회	6~10회	11회~														
과태료 (회당)	10만원	25만원	50만원														

<개정이유>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2의2·§13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p> <p>*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p> <p>○ 세관장 발급</p> <p>- 발급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발급</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자율발급 절차 신설</p> <p>○ (좌 동)</p> <p>○ 자율발급</p> <p>-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 신청</p> <p>*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p> <p>- (유효기간) 지정 후 3년</p> <p>-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p>

<개정이유> 수출기업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단축(환특령 §14⑥·⑦)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정액환급률표 적용·비적용 변경 제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 비적용) 2년 * 적용시 환급액이 비적용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 (비적용 → 적용) <u>2년</u> * ①소요량 계산 곤란하거나 ②비적용 후 환급실적 없는 경우 제한기간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제한기간 단축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년</u> * (좌 동)

<개정이유> 수출기업 환급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사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사령 §36의2·별표3)

— < 법 개정내용(관세사법 §31②) > —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관세사 휴업·폐지 등 신고 의무 위반: 30만원 ○ 통관취급법인 관세사 1명 이상 미배치: 100만원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6.6.24.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타 개정사항

(1)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채 관련 손익통산 허용(교육세령 §4①)

현 행	개 정 안
<p>□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유가증권)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손익통산 불가) ○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과 외환매매 손익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손익통산 허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국채 관련 과세표준 계산 방식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국채) 국채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손익통산 허용)

<개정이유> 국채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합리화(교육세령 §4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용역 가액 ○ 자산·부채 평가 또는 수익·비용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수수료 <p style="text-align: center;">* (은행)햇살론뱅크, (카드)햇살론카드, (저축은행)근로자햇살론 등</p>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p style="text-align: center;">* 신용카드 발행업자와 가맹점 모집·관리업무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제외 항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결제대금을 감액청구시 해당 할인액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어민 등이 기자재 사후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 ○ 세금계산서 ○ 농어민등확인서* * (축산업주업법인) 세무서장이 발급 (개인)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이 확인(조합원인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첨부서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농어민등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명칭 정비(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input type="checkbox"/> 용어 정비 ○ 농업용 방제기

〈개정이유〉 용어 정비

(5)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 농업용 로더, 버섯재배용기, 수산물 건조기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추가 ○ (좌 동) ○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콩나물 두절기 및 어업용 고압세척기

〈개정이유〉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무면허 주류 중개 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정비
(처벌절차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p> <p>* 「조세범 처벌법」 §6의 범칙 행위</p> <p>① 무면허로 주류(밀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p> <p>- 주종 및 제조·판매 용량에 따라 50만~3천만원</p> <p>②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p> <p>- ①의 50%에 해당하는 금액</p> <p>③ 무면허로 주류 소매</p> <p>- ①의 30%에 해당하는 금액</p>	<p><input type="checkbox"/>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시 도소매와 동일한 벌금 상당액 부과</p> <p>① 무면허로 주류(밀술·술덧 포함) 제조 또는 해당 주류 도매·중개</p> <p>- (좌 동)</p> <p>② 주류제조면허자 제조 주류를 무면허로 도매·중개(사업자 간)</p> <p>- (좌 동)</p> <p>③ 무면허로 주류 소매·중개(사업자-개인 간)</p> <p>- (좌 동)</p>

〈개정이유〉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 발생 분부터 적용

(7) 과세자료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과제령 §3·별표)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기관 및 제출자료</p> <p>○ (지방자치단체)</p> <p>-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해양경찰청)</p> <p>-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말소등록에 관한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금융결제원)</p> <p>-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제출자료 추가</p> <p>○ (좌 동)</p> <p>-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p> <p>○ (좌 동)</p> <p>-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하는 출입항 신고자료 (승선자 명부 포함)</p> <p>○ (좌 동)</p> <p>-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p>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제정(세수추계위원회설치·운영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data-bbox="391 371 1038 416">□ 세수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16 472 1294 517">○ (목적) 세수 추계·전망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li data-bbox="416 562 1396 719">○ (설치·기능) 세수추계 전제 여건, 세수실적 분석 및 전망, 기타 세수추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설치 <li data-bbox="416 775 1396 931">○ (구성) 재정경제부 제1차관(위원장)·세제실장(부위원장),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간사),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관세청 차장 <li data-bbox="416 987 1374 1099">○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 비공개 * 회의록도 작성 제외 <li data-bbox="416 1144 1396 1312">○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운영 * 現세수추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시장자문단 구성원 <li data-bbox="416 1368 1396 1525">○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 의뢰 가능 <li data-bbox="416 1581 1007 1626">○ (존속기한) 영 시행일부터 5년

<제정이유> 세수 추계·전망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세무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령	세무사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	환특령	환특칙
▪ 관세사법	관세사법	관세사령	관세사칙
▪ 교육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령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
▪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령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제법	과제령	과제칙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세수추계위원회 설치·운영규정	